

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장의 개혁 방향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2.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시장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 4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등 개혁방안 구체화
2.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  
제 6 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조사·연구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제 9 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5 조 제 2 항 중 "사용량을 호수로"를 "사용량을 호수(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포함)로"로 하고, 같은 조 제 6 항 중 "이를 절상"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둘째자리 이하는 절사)"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 25 조 제 2 항 및 제 6 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